

#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[통합형 지원사업\_산업부 소관 4개 사업]

수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통합형\_산업부)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일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## 1. 모집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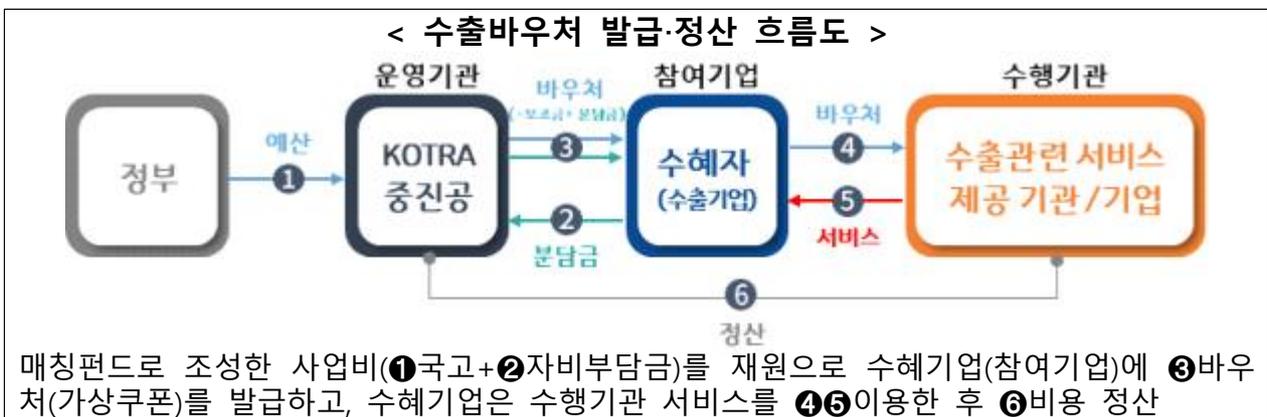
### □ 참여기업 모집규모 :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개사

### □ 사업기간 : 6개월 미만으로 세부사업 별 상이 (6. 세부사업별 모집내용 참조)

### 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/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
### □ 사업내용

-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


## 2. 지원요건 및 내용

### □ 지원요건(공통)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- \* 단, 소부장/소비재/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3개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대상 제한

### 신청 제외 대상

- ◆휴·폐업 기업
- ◆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자/기업  
※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◆'19-'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- ◆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,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
- ◆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

## 3. 참여기업 신청방법

-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및 접수처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기간 : 세부사업 별 신청기간 상이
  - \* 소부장/소비재/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: '20. 7. 2(목) ~ 별도 공지 까지
  - \* 중견 글로벌 지원 : '20. 7. 2(목) ~ 7. 31(금) 18시 까지
- 신청서류 : 사업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
- 진행절차 : 진행일정 및 순서는 세부사업별로 상이

## 4. 문의처

세부사업명	담당기관 및 부서	전화번호
소부장/소비재/서비스 선도기업 육성	KOTRA 수출바우처팀	02-3460-3422
중견기업 글로벌 지원	KOTRA 강소중견기업팀	02-3460-7231/7238
시스템 관련	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커뮤니티>문의하기>문의유형: 시스템	

## 5. 바우처 서비스 메뉴

○ 12개 유형으로 분류된 메뉴에 총 6,000여개 서비스 등록

대분류	정 의	내용(예시)
조사·일반 컨설팅	정보조사 및 법무·세무·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	파트너·바이어 발굴조사, 해외시장조사, 소비자 리서치,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·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
통번역	기업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	계약/법률 문서, 비즈니스/기술문서,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
역량강화교육	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·지원	무역실무, 글로벌마케터 양성,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
특허·지재권· 시험	특허·지재권 취득,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	현지시험·인허가, 지식재산권 등록,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/지재권/시험분야 유사서비스
서류대행· 현지등록· 환보험	수출·무역·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, 환보험 서비스 지원	계약서, 통관/선적서류, 결제서류, FTA원산지 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
홍보·광고	기업/제품/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	TV·PPL, 신문·잡지 홍보/광고, SNS·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/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
브랜드 개발·관리	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	수출브랜드, 네이밍, 온·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, 정품인증,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·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
전시회·행사· 해외영업지원	수출관련 행사 기획 및 해외 영업지원	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, 바이어 매칭 상담회·세미나·시연회 및 해외전시회·행사·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
법무·세무· 회계컨설팅	해외진출을 위한 법무·세무·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지원	회계감사, 세무자문, 법률자문, 법인설립, 해외 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,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
디자인개발	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	외국어 종이/전자카달로그 제작, 외국어 포장 디자인, 외국어 홈페이지(반응형), 모바일앱, 해외온라인몰 페이지, 제품디자인, CI·BI 개발 등
홍보동영상	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	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
해외규격인증	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·심사·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지원	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, 위생,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

## 6. 세부 사업별 모집내용

### 가. 소·부·장/소비재/서비스 선도기업 육성

지원목적 : 수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해외마케팅 활동 자금 지원

\* 위기대응 목적의 특별모집으로 매칭금액 **1천만원·5개월 미만** 바우처 발급

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

세 부 사 업	지 원 대 상	국 고 지원한도	국 고 보조율
소재·부품·장비 선도기업 육성(00개사)	·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·국내 중소기업	700만원	70%
소 비 재 선도기업 육성(00개사)	·5대 소비재 분야 유망 ·국내 중소기업		
서 비 스 선도기업 육성(00개사)	·서비스 분야 유망 ·국내 중소기업		

\* 공공기관(KOTRA) 주관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사업 참여

○ 금번 추가모집에 선정될 경우 '20년 하반기 모집 소사업에 신청 불가하며, 모집기간이 겹치는 他사업과의 중복신청도 불가

○ 특히 同모집은 매칭 기준 1천만원 이내, 5개월 미만(11월內 소진)의 단기, 신속 이용기업이 대상

\* 따라서 고액 또는 장기(1년협약) 바우처가 필요한 기업은 他사업 신청

사업기간 : '20. 7. 2. ~ '20. 11. 30. (5개월 미만 단기)

신청방법 : 접수처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기간 : '20. 7. 2. ~ 별도 공지 까지

신청서류 : 바우처 신청서, 각종 증빙서류\*

\* 기업소개서, 중소기업 확인서, 신용정보·제공 동의서 등

진행절차 : 해외마케팅 이행 > 신청 > 심사 > 협약·발급 > 정산

\* 기타 사업신청, 서류 제출 및 진행절차 관련 질의는 접수처로 문의

사업문의 및 접수처

담당기관(부서)	문의처	접수처
KOTRA(수출바우처팀)	02-3460-3422	voucher@kotra.or.kr

## 나.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

□ 지원목적 :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해외마케팅 활동 자금 지원

\* 위기대응 목적의 특별모집으로 최대 5,000~10,000만원 바우처 발급

□ 지원대상 :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(월드챔프) 및 중견기업,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·강소기업(Pre-중견글로벌),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졸업기업(Post-중견글로벌)

□ 사업기간 : '20. 9. 1 ~ '21. 2. 28 (6개월)

□ 지원규모 및 한도

○ 지원규모 : 60개사 내외

○ 지원한도(국고) : 기업당 3,000만원~5,000만원 한도 (보조율 30~70%)

<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세부유형 별 구성 >

구 분	Pre 중견 글로벌	중견 글로벌	Post 중견 글로벌
지원대상	① 중견후보기업 ② 예비 중견기업	월드클래스 300, 중견기업 (중견유예 포함)	중견 글로벌 졸업기업
지원기간	최대 3년	최대 5년	최대 3년
매칭펀드 총 액	최대 5,000만원	최대 6,500만원(중소) 최대 10,000만원(중견)	최대 10,000만원
국고지원 한도(보조율)	최대 3,500만원(70%)	최대 4,550만원(70%)(중소) 최대 5,000만원(50%)(중견)	최대 3,000만원(30%)

\* 매칭펀드 : 총 사업비 의미(국고보조금 + 기업분담금)

\* 동사업은 지원기간 산정 시 제외(코로나19 긴급성, 반액 지원 등 감안)

### ※ 세부유형 선택 시 주의사항

\* 중소기업 : 원칙적으로 Pre 중견 글로벌 사업에 지원

\* 월드클래스 기업 중 중소기업

· 강소중견기업팀 참가이력이 없으며 최초 참가시 : Pre 중견 글로벌에 지원

· 사업 갱신 시 : 중견 글로벌(최대 6,500만원)에 지원

\* 중견 유예기업 : 중견 글로벌(최대 6,500만원)에 지원

□ 성과지표 : 목표시장 수출액

\* 관세청 미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무역협회 등록 및 제출 의무

□ 지원자격 요건

### ① Pre 중견 글로벌

○ 대상기업 : 중견후보\*, 예비중견기업\*\*

\* 중견후보 : 불임 2의 매출액 이상 중소기업

\*\* 예비중견 : 매출액 100억원 이상(수출 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)

## ② 중견 글로벌

- 대상기업 :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혹은 중견기업(중견유예 포함)
  - \* 중견유예기업 : 붙임 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유지 기업
  - \*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

## ③ Post 중견 글로벌

- 대상기업 : 기존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

<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사항 >  
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우대  
 <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>

지정 지역	산 업	지정시기
전북 군산시	자동차	'18년 4월
거제시, 창원시 진해구, 통영시·고성군(이상 경남)영암군·목포시·해남군(이상 전남)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	조선업	'18년 5월

·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선정 우대  
 \*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(공고일 기준 2년內) 등 관련증빙 제출

·미국의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 대상 선정 우대  
 \* 對이란제재 대상기업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

·고용 증가기업,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및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기업 등 우대

·정부정책(U-Turn, 개성공단 등)사업 기업 및 ATC 선정기업 우대

·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 우대 등

## □ 추진절차

- 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평가·선발 → 로드맵 수립 → 사업수행 → 정산

신청·접수	평가·선발	협약체결	바우처발급	사업개시
홈페이지접수 <a href="http://www.수출바우처.com">www.수출바우처.com</a>	사업별 평가·선발	선정기업-운영기관 협약 체결	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	수출마케팅 사업 진행
'20.7.2~7.31	'20.8.18	'20.8.18~8.31	'20.8.18~8.31	'20.9.1~'21.2.28

## 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'20. 7. 2(목) ~ '20. 7. 31(금) 18시까지
- 홈페이지 신청 : [www.exportvoucher.com](http://www.exportvoucher.com) (또는 [수출바우처.com](http://수출바우처.com))
  - \* 사업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
  - \* (중요)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이 동사업의 목적으로, 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신청서 평가

## □ 문의처 : KOTRA 강소중견기업팀

- (사업관련) 김도경 대리 02-3460-7231, [dk90@kotra.or.kr](mailto:dk90@kotra.or.kr)  
 박혜윤 대리 02-3460-7238, [hypark@kotra.or.kr](mailto:hypark@kotra.or.kr)
- (신청관련) 이수연 사원 02-3460-7241, [soo123@kotra.or.kr](mailto:soo123@kotra.or.kr)  
 김송이 사원 02-3460-7237, [bwv1065@kotra.or.kr](mailto:bwv1065@kotra.or.kr)  
 문경진 사원 02-3460-7236, [moonkj@kotra.or.kr](mailto:moonkj@kotra.or.kr)

<붙임 1>

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견기업 규모 기준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초과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초과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D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
22. 건설업	F	
23. 도매 및 소매업	G	
24. 음료 제조업	C11	
25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6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7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30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E	
31. 운수업	H	
3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J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
33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4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N	
3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6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7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
38. 숙박 및 음식점업	I	
39. 금융 및 보험업	K	
40. 부동산업 및 임대업	L	
41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 :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<붙임 2>

##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증견기업 후보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매출액 1,000억원 이상	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6. 가구 제조업	C32	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매출액 700억원 이상	
8. 광업	B		
9. 식료품 제조업	C10		
10. 담배 제조업	C12	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22. 수도업	E36		
23. 건설업	F		
24. 도매 및 소매업	G		
25. 음료 제조업	C11		매출액 550억원 이상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제외)		
32. 운수 및 창고업	H		
33. 정보통신업	J	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매출액 400억원 이상	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(N76제외)	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매출액 300억원 이상	
41. 부동산업	L		
42. 임대업	N76		
43. 교육 서비스업	P		

비고 :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